

## 2016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

### □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/월)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	6,828,680

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36호(2015.07.29)

### □ 구제급여별 지급금액

피해인정질병		요양생활수당		특별유족조위금		장의비 및 특별장의비			
원발성 악성종피종		1,314,130원 <small>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/1000)</small>		37,224,600원 <small>(장의비의 1,500/100)</small>		2,481,640원 <small>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/1000)</small>			
		기금	지자체	기금	지자체				
원발성 폐암		1,314,130원 <small>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/1000)</small>		37,224,600원 <small>(장의비의 1,500/100)</small>				기금	지자체
		1,182,720원		131,410원				34,502,140원	3,722,460원
미만성 흉막비후		946,170원 <small>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/1000)</small>		18,612,300원 <small>(장의비의 750/100)</small>				기금	지자체
		851,560원		94,610원				16,751,070원	1,861,230원
석면 폐증		630,780원 <small>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/1000)</small>		12,408,200원 <small>(장의비의 500/100)</small>		2,233,480원			
		기금	지자체	기금	지자체	248,160원			
3급		315,390원 <small>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/1000)</small>		6,204,100원 <small>(장의비의 250/100)</small>					
		기금	지자체	기금	지자체				
		283,860원		31,530원		5,583,690원			
						620,410원			

※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: 「국고금관리법」 제47조(국고금의 끝수 계산)

※ 구제급여 분담비율 = 기금(90%, 원단위 절상) : 지자체분담(10%, 원단위 절하)

※ 위 구제급여액은 「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제급여 분담비율

구 분	분담비율(시:구)	비 고
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	70 : 30	25개 자치구
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	50 : 50	-

※ 적용기간 : 2016.1.1 ~ 2016.12.31.

